

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

- 11월 28일부터 「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」 본격 운영
- 도로 이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 6배 증가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보험개발원(원장 허창언)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(이하 ‘무보험 자동차’)를 근절하기 위한 「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」(이하 ‘고도화 시스템’)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*을 가입하게 하고,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.

*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1.5억,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(이하 ‘의무보험’)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그 외 보장 항목(대인Ⅱ, 자기신체손해 등)은 필요에 따라 가입 가능

○ 또한, 「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*」을 구축하여, '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(가입률 97%)를 관리하고 있으며,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.

*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,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('02 구축)

○ 하지만,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,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.

○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,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('25.11월 기준)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이와 함께,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·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*,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** 등도 운영 중이다.

*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, '24년 2,683건 지원, '25년 예산 186억원

**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·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, '24년 8,133건 지원, '25년 예산 198억원

○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,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,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”라며,

○ “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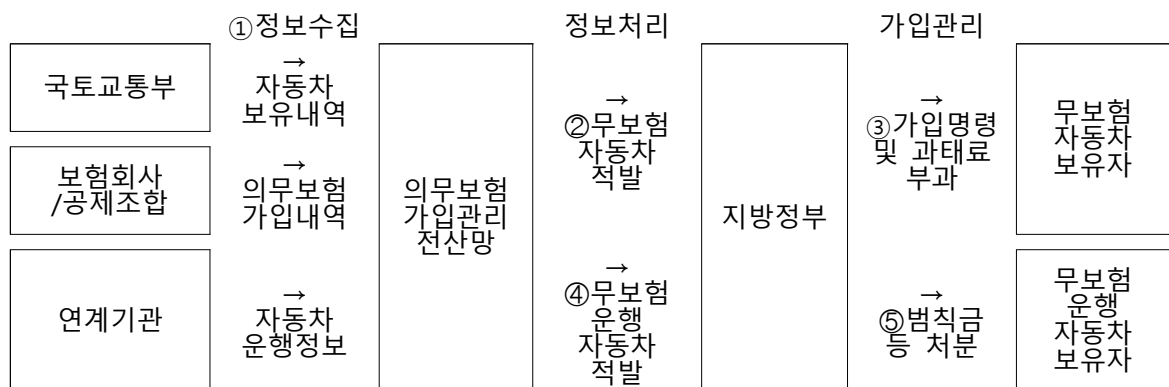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 < 총괄 >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	배소명 (044-201-3855)
		담당자	팀 장	백선영 (044-201-4760)
			사무관	김경모 (044-201-4761)
			주무관	박형빈 (044-201-4870)
			전문위원	전용환 (044-201-4763)
< 협조 >	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자동차정보1팀	책임자	팀 장	이용길 (02-368-4342)
		담당자	담 당	남은비 (02-368-4051)

□ 개요

- (추진배경)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「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」의 연계기관 확대, 자료처리 프로세스 등 개선
- (사업기간) '25. 4. 30. ~ 10. 31.(6개월)
- (사업비) 총 804백만원
- (수행기관) 보험개발원^{총괄}, 미래정보기술원^{감리}, 한국전산감리원^{개인정보영향평가}, 위세아이텍^{개발}

□ 사업내용

- (S/W)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기관별 정보 송수신 기능 개발 및 정보 처리 프로세스 개선
- (H/W) 연계기관 확대로 인한 정보 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메모리·저장장치·회선속도 등 증설
- (업무절차)
 - ① 자동차 보유내역, 의무보험 가입내역, 자동차 운행정보 등 정보수집
 - ② 자동차 보유내역과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대조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통보
 - ③ 지방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
 - ④ 무보험 자동차 중 운행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보험 운행 자동차로 단속
 - ⑤ 지방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범칙금 등 처분



<전산망 정보처리 절차>